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찬성자:27명)

나. 의안번호 : 제 2957 호

다. 발의일자 : 2025. 08. 11

라. 회부일자 : 2025. 08. 14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위험순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일반순직 소방공무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반순직 소방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순직 또는 공상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을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서)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8. 20.~08. 24.)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자 지원 대상 범위를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¹⁾까지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²⁾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인정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일반 순직 및 공상의 경우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1)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하생략)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이하생략)

2)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순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질병이 인정된 사람(이하 “공사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 2.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활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사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해 공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서울시 순직·공사상소방공무원 현황

○ 법 제4조 및 제4조의2³⁾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하생략)
-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이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이와는 별개로 법 제5조4)는 공무원상 재해 중에서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중 소방공무원의 경우 주로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과 같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해와 함께 관련 실기·실습훈련 중 발생한 재해 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그 직무의 위험성을 인정한 경우까지 포괄하여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46년부터 현재(‘25.7월)까지 서울시 순직·공상소방공무원 현황을 보면, 순직소방공무원은 총 92명(소방활동 45명(화재39, 구조구급4, 생활안전1, 교육훈련1), 기타 47명⁵⁾)이며, 공상소방공무원은 총 3,129명(소방활동 2,009명, 그 외 1,120명)에 이르고 있음.([표2]참고)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생략)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9. (생략)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5) 순직(기타)의 세부내역

- 비상근무·순찰·소내 근무 중 청사 내 업무상 과로 순직(28), 망루근무 중 추락 순직(1)
- 공기호흡기 충전작업 여과기 파열로 인한 순직(1), 청사 순찰·퇴근 중 교통사고 순직(4),
- 근무중 동료의 휘두른 칼에 찔려 순직(1)
- 간암(2), 심근경색(1), 폐암(2)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1), 비호지킨림프종(1), 우울증(3), 뇌경색(1), T세포 림프종(1) 질병으로 인한 순직

-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소방활동 중 사망하여 ‘위험순직소방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으며 이후 발생한 모든 순직자는 일반적인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일반순직소방공무원’에 해당함.
- 반면, 공상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연도별 발생 건수의 차이는 있으나 소방활동뿐 아니라 일상업무, 출퇴근, 질병, 체력단련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 서울시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현황(1946년 ~ 2025년 7월) (단위 : 명)

구분	합계	순직			공상 소계	공상 세부내역											
		소계	소방활동 (위험)	기타 (일반)		소방활동(위험)						소방활동 이외(일반)					
						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계	일상 업무	출퇴근	질병	체력 단련	기타
계	3,221	92	45	47	3,129	2,009	2,376	136	401	46	171	1,120	2,307	151	99	101	104
'25.7.	108	1	0	1	107	69	19	9	22	4	15	38	12	4	7	9	6
2024	184	2	0	2	182	88	32	10	18	6	22	94	42	14	19	10	9
2023	211	1	0	1	210	119	34	15	42	7	21	91	28	13	29	10	11
2022	177	3	0	3	174	117	36	13	47	7	14	57	21	17	12	4	3
2021	150	1	0	1	149	93	32	13	38	2	8	56	23	19	6	2	6
2020	193	1	0	1	192	107	32	5	54	1	15	85	39	20	2	8	16
2019	172	1	0	1	171	99	34	13	30	6	16	72	26	11	5	15	15
2018	160	0	0	0	160	98	38	11	34	4	11	62	22	12	8	11	9
2017	151	0	0	0	151	82	28	14	27	4	9	69	31	9	3	11	15
2016	78	1	0	1	77	48	12	3	19	1	13	29	16	3	1	4	5
2015	72	0	0	0	72	52	15	11	21	1	4	20	7	6	4	3	0
2014	55	1	0	1	54	41	11	10	9	1	10	13	6	5	0	1	1
2013	47	0	0	0	47	30	16	4	8	0	2	17	7	4	0	3	3
2012	55	0	0	0	55	28	9	2	10	0	7	27	8	9	1	5	4
2011	69	0	0	0	69	48	17	3	22	2	4	21	8	5	2	5	1
2010	63	2	2	0	61	39	2011년부터 공상 세부내역 분류함					22	2011년부터 공상 세부내역 분류함				
2009	47	0	0	0	47	31						16					
2008	61	3	3	0	58	43						15					
2007	51	0	0	0	51	29						22					
2006	70	2	2	0	68	37						31					
2005	56	1	0	1	55	41						14					
2004	53	2	2	0	51	36						15					
2003	58	4	0	4	54	36						18					
2002	51	1	0	1	50	33						17					
2001	54	7	6	1	47	31						16					
2000 이전	775	58	30	28	717	534						183					

- 참고로, 현행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반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위험직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3]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내용(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구분	지원근거	지원내용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	○ 사망조위금 : 본인 기준소득월액 × 2배 ○ 유족연금 - 본인 기준소득월액 × (38%+유족가산) ○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 24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금 - 배우자(1,426 천원), 자녀(1,653 천원), 부모(1,401 천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유가족 격려금 - 20,000천원 지급
위험직무	「공무원 재해보상법」	○ 사망조위금 : 본인 기준소득월액 × 2배 ○ 유족연금 - 본인 기준소득월액 × (43%+유족가산) ○ 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 45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금(천원) - 배우자(2,036 천원), 자녀(2,361 천원), 부모(2,001 천원)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 유가족 지원사업 ▶ 자녀 장학금 지원 - 초(100만원), 중·고(200만원), 대학(400만원) ▶ 유족 건강검진 지원 - 1인 30만원 이하, 연1회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문화재단·한국문화재단·한국문화재단 지원사업 중 ▶ 유족 위로금 지원 - 2천 만원 이하 ▶ 취업·창업지원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 ○ 지원내용 : 영결식, 장례식 등 비용

■ 순직·공상소방공무원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안 제2조)

-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안 제1호에 ‘순직소방공무원’과 안 제2호에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그 범위를 법 규정에 따라 재정비하려는 것임.
- 세부적으로, 안 제1호에서는 ‘순직소방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안 제2호에서는 ‘공상소방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재해로 인해 공무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상 ‘공사상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원 부상·질병이 인정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 제5조에서 정한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재해임.
- 이로 인해 공무원 재해로 순직 또는 공상 소방공무원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원인이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추모사업, 장학금, 건강검진, 위로금, 취업·창업지원 등⁶⁾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6)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순직 또는 공상에 대해 법적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이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위험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예우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사료됨.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취업·창업 지원)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